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지 방 공 무 원 임 용 후 보 자 장 학 규 정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21.1.12. 공포, ’22.1.13. 시행) 및 「지방공무원법」(‘21.00.00. 개정, ’22.1.13. 시행)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의장까지 임용권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법령 정비

3. 주요내용

가. 임용권자의 범위에 지방의회의 의장 추가(안 제1조~제10조, 제12조~제16조, 제18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임용권이 지방의회 의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임용권자에 지방의회의 의장도 추가

나. 연대보증인 관련 조문 정비(안 제4조)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연대보증인 제도 폐지를 반영하여 보증인의 재정보증서 첨부로 변경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0000.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일부개정령안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시·도회의의 의장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조와 제3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및 단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며, 제2항 중 “연대보증인”을 “보증인”으로 한다.

제5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6조 각 호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7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

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며, 같은조 제3항 본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각 호외의 본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조제1항제3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12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조 제3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외의 본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조제1항제2호 중 “지방자치

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조 제3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16조와 제18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u>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u>이 우수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확보를 위하여 각급 학교의 재학생에게 지급할 장학금의 범위·지급대상·의무복무기간·의무불이행시 환수할 금액 기타 장학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시·도의회의 의장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 ----- ----- ----- -----.
제2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이 영에 의한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전문대학 및 대학의 학과중 <u>지방자치단체의 장</u>이 정하는 학과의 재학생으로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발된 자(이하 “장학생”이라 한다)로 한다.	제2조(장학금의 지급대상)----- ----- -----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 ----- -----.
제3조(장학생의 수) 이 영에 의한 장학생의 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수급전망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u>지방자치단체의 장</u>이 정한다.	제3조(장학생의 수)----- ----- -----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

제4조(장학생의 지원) ① 장학생이 되려는 사람은 재적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u>지방자치단체의 장</u>에게 지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장학생이 되려는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u>지방자치단체의 장</u>이 인정하는 사람)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서에는 2명의 <u>연대보증인</u>의 재정보증서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해야 한다.	제4조(장학생의 지원) ① ----- ----- ----- -----<u>지방자치단체의 장</u> 또는 <u>지방의회의 의장</u>----- -----, ----- ----- -----<u>지방자치단체의 장</u> 또는<u>지방의회의 의장</u>----- -----. ② ----- <u>보증인</u>----- ----- -----.
제5조(장학생의 선발) <u>지방자치단체의 장</u>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실기시험은 <u>지방자치단체의 장</u>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을 통하여 장학생을 선발하고 10일 내에 그 결과를 해당 학교장 및 본인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제5조(장학생의 선발) <u>지방자치단체의 장</u>과 <u>지방의회의 의장</u>----- ----- ----- -----<u>지방자치단체의 장</u> 또는 <u>지방의회의 의장</u>----- ----- ----- -----.
제6조(지급기간) <u>지방자치단체의 장</u>은 장학생의 수학기간동안 계속하	제6조(지급기간) <u>지방자치단체의 장</u>과 <u>지방의회의 의장</u>-----

여 장학금을 지급하되, 다음의 기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 3. (생 략)	----- -----. 1. ~ 3. (현행과 같음)
제7조(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입학금·수업료 기타 공납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과 일정액의 수학보조금으로 하되, 장학금액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u>지방자치단체의 장</u> 이 정한다.	제7조(지급범위) ----- ----- ----- ----- ----- <u>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u> -----.
제8조(지급시기등) ① 학교장은 당해 학교의 등록금 접수마감일 15일전에 <u>지방자치단체의 장</u> 에게 장학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입학연도의 최초장학금의 신청은 장학생 선발일로부터 30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② <u>지방자치단체의 장</u> 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학교장에게 장학금을 교부한다. ③ <u>지방자치단체의 장</u> 으로부터 장학금을 교부받은 학교장은 장학금 중에서 등록금은 이를 대납하고, 그 잔여액은 즉시 장학생에게 지급하고, 장학금 지급결과를 <u>지방자치단체의 장</u>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처음으로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이미 등록금을 납부한 때에는 학교장	제8조(지급시기등) ① ----- ----- <u>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u> -----, ----- -----. ② <u>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u> -----. ③ <u>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u> ----- ----- ----- <u>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u> -----, ----- -----

은 교부받은 장학금 전액을 그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
제9조(지급정지) ① <u>지방자치단체의 장</u> 은 장학생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1. ~ 2.(생 략) 3. 기타 <u>지방자치단체의 장</u> 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u>지방자치단체의 장</u> 은 그 장학생에게 계속하여 잔여기간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급정지) ① <u>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u> ----- ----- -----. 1. ~ 2.(현행과 같음) 3. 기타 <u>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u> ----- ② ----- ----- <u>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u> ----- -----.
제10조(지급중단) <u>지방자치단체의 장</u> 은 장학생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단한다. 1. ~ 7.(생 략)	제10조(지급중단) <u>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u> ----- ----- -----. 1. ~ 7.(현행과 같음)
제12조(학사관리) ① <u>지방자치단체의 장</u> 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학교장과 협의하여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장학생에게 장차의 공무원임용과 관련된 교육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u>지방자치단체의 장</u> 은 교육감	제12조(학사관리) ① <u>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u> ----- ----- ----- ----- ----- ----- ----- <u>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u>

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장학생의 성적 및 수학 상태를 매학기 종료후 15일내에 <u>지방자치단체의 장</u>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의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u>지방자치단체의 장</u>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u>의회의 의장</u> -----. ② ----- ----- <u>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u> -----. ③ ----- ----- ----- <u>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u> -----.
제13조(임용시험등) ① 장학생이 학교를 졸업한 때에는 <u>지방자치단체의 장</u>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경쟁 임용시험등(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용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응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u>지방자치단체의 장</u> 이 정한 학과와 관련된 공무원임용시험에 이미 합격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u>지방자치단체의 장</u> 은 충원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합격한 장학생을 본인의 동의를 얻어 당해 도내의 다른 임용권자에게 임용추천을 할 수 있다.	제13조(임용시험등) ① ----- ----- <u>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u> ----- ----- ----- ----- ----- <u>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u> ----- ----- ② <u>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u> ----- ----- ----- -----.

제14조(복무의무) ① 장학금을 지급받아 학교를 졸업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장학금을 지급받아 수학한 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기간동안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u>지방자치단체의 장</u> 이 정한 학과와 관련된 분야에서 복무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4조(복무의무) ① ----- ----- ----- ----- ----- <u>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u> ----- -----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장학금의 반납) ① <u>지방자치단체의 장</u> 은 장학생 또는 장학생이었던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개월 내에 본인에게 장학금을 반납할 것을 명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사망,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복무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생 략) 2. 장학생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시험에 불응하거나 <u>지방자치단체의 장</u> 이 정한 기간내에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때 3. (생 략)	제15조(장학금의 반납) ① <u>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u> ----- -----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 ----- <u>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u> -----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③ <u>지방자치단체의 장</u>은 제1항에 따라 장학금 반납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금액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의 재정보증인 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해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u>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u>----- ----- ----- ----- ----- ----- -----.
제16조(채납처분) <u>지방자치단체의 장</u>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반납의무자가 반납고지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60일내에 반납할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납처분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16조(채납처분)<u>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u>----- ----- ----- ----- ----- -----.
제18조(위임규정) 장학생지원서의 서식 기타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지방자치단체의 장</u>이 정한다.	제18조(위임규정) ----- ----- -----<u>지방자치단체의 장</u> 또는 <u>지방의회의 의장</u>-----.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연 락 처	(044) 205 - 3352